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0. 4. 20.

사회건설위원회

###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 2010년 3월 24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0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제1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회의(2010. 4. 15)

상정 의결

###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선)

#### 가. 제안이유

- 저소득청소년에게 충분하고 고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구립청소년독서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청소년독서실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안 제3조)
- 청소년독서실의 이용대상자 규정(안 제4조)
- 청소년독서실 이용시간을 현행 07:00 ~ 23:00에서 08:00 ~ 23:00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
- 청소년독서실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안 제5조제2항)
- 청소년독서실의 휴관일을 매월 2, 4주 금요일 일률적인 휴관에서 독서실을 지역별로 나누어 격주 휴관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1호)
-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감면 기준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 청소년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사용료 반환 시 반환 근거 규정(안 제8조)

-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기간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
- 구청장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안 제10조)
- 구청장이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
-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정함(안 제12조)
- 청소년독서실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이용자가 시설 이용 중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근거 규정을 둠(안 제15조)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이남식)

-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청소년독서실의 이용은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되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이용시간 및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사용료 감면대상을 명시,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운영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음.
-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저소득청소년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이용 청소년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4. 審査結課 : 原案 可決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267호
----------	-------

제출연월일 : 2010. 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저소득청소년에게 충분하고 고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구립청소년독서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독서실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안 제3조)
- 나. 청소년독서실의 이용대상자를 규정(안 제4조)
- 다. 청소년독서실 이용시간을 현행 07:00 ~ 23:00에서 08:00 ~ 23:00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
- 라. 청소년독서실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안 제5조제2항)
- 마. 청소년독서실의 휴관일을 매월 2, 4주 금요일 일률적인 휴관에서 독서실을 지역별로 나누어 격주 휴관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1호)
- 바.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감면 기준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 청소년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사.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사용료 반환시 반환 근거 규정(안 제8조)

- 아.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기간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9조)
- 자. 구청장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안 제10조)
- 차. 구청장이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1조)
- 카.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정함. (안 제12조)
- 타. 청소년독서실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 파. 이용자가 시설 이용 중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근거 규정을 둬. (안 제15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1)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0. 2. 4. ~ 2.24.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 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이하 “청소년독서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청소년독서실의 이용)** 청소년독서실의 이용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며,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을 허락한 자로 한다.

**제5조(이용시간 및 사용료)** ① 청소년독서실의 이용시간은 08:00 ~ 23:00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①** 청소년독서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관일은 매주 금요일로 운영하되, 청소년독서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근 독서실간 휴관일과 중복되지 아니하게, 격주·순환 휴무.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
3. 시설물 보수·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하려면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하면 예외로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5.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자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일권은 사용료 전액을, 정액권은 미사용 일수에 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청소년독서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으로부터 운영·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청소년독서실을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조정·연장할 수 있다.

③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청소년독서실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나, 제5항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물품관리)** 수탁자는 청소년독서실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입장의 제한)** 수탁자는 청소년독서실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 15조(손해배상)**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자가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 상당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 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위탁중인 청소년독서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별표 1]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명칭 및 위치

명 칭	소 재 지
구민회관 청소년독서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
영등포본동 청소년독서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2
영등포동 청소년독서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49-1
도림1 청소년독서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81-2
도림2 청소년독서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222-7
양평3가 청소년독서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36
양평2동 청소년독서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3-1
신길3동 청소년독서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68-4
신길4동 청소년독서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209-102
신길5동 청소년독서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22
신길6동 청소년독서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741-37
신길7동 청소년독서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897-3
대림1동 청소년독서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99-2
대림2동 청소년독서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05
청소년문화의집 독서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07-2

[별표 2]

##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구 분

○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

○ 기 타 : 청소년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이용을 허락한 자

사용료 기준

구 분	사용기준	금 액
입실요금	1일	500원
사물함 사용료	1개월	15,000원